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18
------------	-------

발의연월일 : 2017. 12. 29.

발 의 자 : 김선동 · 강석진 · 여상규

박명재 · 문진국 · 정유섭

정우택 · 민경욱 · 박완수

최연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은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안전성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방지조치에 응할 책무를 부여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탁을 받은 경우 물품 수거와 시료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6항 신설, 제77조).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제77조의 제목 중 “검사와”를 “검사·수거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하게”를 “검사 또는 수거하게”로, “서류”를 “시
료·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
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
는지 여부를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u>1.</u> ~ <u>3.</u> (생략) ② ~ ⑤ (생략)</p>	<p><u>2.</u> ~ <u>4.</u>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p>
--	--